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삭제>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8(6)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6)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3(6)			
	(2) 설비용량 100MW 미만인 액체연료 사용시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1(4)			
황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삭제>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6) 80(6)			

질소 산화 물 (pp 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40(6)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에 설치한 시설	70(6)
(pp m)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터빈)	80(15)
	(나) 그 밖의 발전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 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43(4)
	(신 설)	
	(신 설)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 소농도)
먼지 (mg/ Sm ³)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 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30(12)

질소 산화 물 (pp m)	<삭제>	
	가) 일반보일러	
	(1)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 간당 24,760,000킬로 칼로리 이상인 시설 (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 전 설치시설)	38(4)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모든 배출시설	6
포름 알데 히드 (pp 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모든 배출시설	6

2)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삭 제>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환경 화학 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30(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3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삭제>	
질소 산화 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 70(12)		<삭제>	

	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70(12)			
일산화탄소(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50(12)		<삭제>		
염화수소(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15(12)		<삭제>		
(신 설)			불소화합물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7(1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 의 가열시설 나)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 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 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 당 200 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4) 30(12)
황산 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328(4)
질소 산화 물 (pp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 의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135(4)

(pp m)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지정 폐기 물 소각시설	1.9(12)
납화 합물 (mg /Sm ³)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 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0.16(12) 0.36(12) 0.18(12)
크롬 화합 물 (mg /Sm ³)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 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 물 소각시설	0.15(12) 0.19(12)

3)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삭 제>		
<삭 제>		
질소 산화 물 (pp	<삭제>	

마) 부타디엔 고무,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스티렌 부타디엔 라텍스 또는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신 설)	200(12)
---	---------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u>26(15)</u>
	(2) 소결광(Sinter) 후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5
	(신 설)	
	(3) 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u>20</u>
	나) 제강(製鋼)공정 (1) 전로(Converter: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 및 정련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40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
	(2)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	10

	<삭제>	
스틸렌 (ppm)	가) 스티렌 모노머 제조시설	16
	나) 폴리스티렌 또는 발포폴리스틸렌 제조시설	16

4) (현행과 같음)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u>16(15)</u>
	<삭제>	
	(2)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7)
	(3)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u>12</u>
	<삭제>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연마 시설 라) 산재생시설	40 44
황산 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u>193(15)</u>
질소 산화 물 (pp 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나) 압연공정의 가열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200(15) 200(11) 200
염화 수소 (pp 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
불소 화합 물 (pp m)	가) 제강공정의 전기로 나)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 3
암모 니아 (pp 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5
	(신 설)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가) 구리 제조과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	7

황산 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u>100(15)</u>
<삭 제>		
<삭 제>		
<삭 제>		
탄화 수소 (TH C) (pp 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알칼 리 처리시설	150

5)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가) 구리 제조과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	7

Sm ³)	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Sm ³)	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9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9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3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
황산 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80	<삭제>		
질소 산화 물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6	<삭제>		

(ppm)	나) 기타 비철금속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3
	(신 설)	
	(신 설)	
	(신 설)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Sm 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다)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9(4) 19(4) 28(12)
황산 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황산 재생시설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u>134(4)</u> <u>202(8)</u> 180(4)
	(신 설)	

납화합물 (mg/Sm ³)	가)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로	1.2
아연화합물 (mg/Sm ³)	가) 아연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로	3 3
탄화수소 (THC)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탈지/화성처리/산알칼리처리 시설	150

6)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Sm ³)	<삭제>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나)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9(4) 28(12)
황산 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황산 재생시설 <삭제>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u>120(4)</u> <u>180(8)</u> 100(4)

	라)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건식 황산 회수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5(12)
질소산화물(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미만인 시설만 해당한다) 나)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48(4) 141(12)
황화수소(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 3
일산화탄소(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30(12) 115(12)
암모니아(ppm)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46
벤젠(ppm)	폐수소각시설	7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	------	--------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삭제>		
<삭제>		
황화수소(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4) 3(4)
일산화탄소(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30(12) 115(12)
<삭제>		
<삭제>		

7) (현행과 같음)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	------	--------

		(표준산소 농도)
염화 수소 (ppm)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 염산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공정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질소 산화 물 (ppm)	가)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50
	나)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93
	다)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신 설)	14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신 설)	

		(표준산소 농도)
<삭 제>		
질소 산화 물 (ppm)	<삭제> 가)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35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45
	다) 시안화나트륨 처리공정 폐가스 소각시설	50(12)
먼지 (mg/ Sm ³)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	25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20
황산 화물 (ppm)	가)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160(8)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60
벤젠 (ppm)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5
아연 화합 물 (mg/ Sm ³)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 용해시설	3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일산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	48(1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황산 화물 (ppm)	황산 제조시설	218(8)

화탄 소 (pp m)	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 각시설(소각용량이 2톤 이상 인 시설)	
시안 화수 소 (pp m)	도료 제조시설	3
벤젠 (pp 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다) 도료 제조시설	5 5 5
포름 알데 히드 (pp 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 설	6 6
탄화 수소 (pp m)	가) 염료 제조시설 나) 유기안료 제조시설 다) 도료 제조시설 라) 플라스틱·고무첨가제 제조시설	180 180 180 180
크롬 화합 물 (mg/ Sm ³)	도료 제조시설의 선별, 분쇄, 혼합 및 포장시설	0.3

9) 현행 8) 내용 이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삭 제>		

질소 산화 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68
	나) 희질산 제조시설	195
암모 니아 (ppm)	(신 설) 질산암모늄(초안) 제조시설	12
불소 화합 물 (ppm)	(신 설) 인산 제조시설	3
	(신 설)	

9) 영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
10)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질소 산화 물(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144
염화 수소 (ppm)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탄화 수소 (ppm)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35 100

<삭제>		
<삭제>		
<삭제>		
먼지 (mg/Sm ³)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시설	25

10) 현행 9) 내용 이동

11) 현행 10) 내용 이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질소 산화 물(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100
염화 수소 (ppm)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탄화 수소 (ppm)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35 100

<u>불소</u> (ppm)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2
<u>페놀</u>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	2

11)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

12)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13)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u>크롬</u> (mg/ Sm3)	주조공정의 용융·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0.3
<u>페놀</u>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3

14)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

(신 설)

<u>불소</u> <u>화합</u> 물 (ppm)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2
<u>페놀</u> <u>화합</u> 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	2

12) 현행 11) 내용 이동

13) 현행 12) 내용 이동

14) 현행 13) 내용 이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u>크롬</u> <u>화합</u> 물 (mg/ Sm3)	주조공정의 용융·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0.3
<u>페놀</u> <u>화합</u> 물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3

15) 현행 14) 내용 이동

16) 영 별표 1 제4호(기초화학)~22호(시멘트)에 따른 업종(보일러)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유연탄 사용시 설	10(6)
	황산 화물 (ppm)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석유코크스 사 용시설	91(6)
	질소산 화물 (ppm)	가) 액체연료(부생연료유)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 전 설치시설 나) 기체연료(LNG)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 전 설치시설	60(4) 38(4)
비고			
1. ~ 2. (생략)			
3. 가목1)부터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4. 가목1)부터 14)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 ₂), 이산화질소(NO ₂),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5. ~ 7. (생략)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 가목1)부터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4. 가목1)부터 16)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 ₂), 이산화질소(NO ₂),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